



#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2019. 05. 07



주 최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Korea Construction Resource Mutual Aid Association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Korea Waste Recycling Association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 Recycling Energy Mutual Aid Association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주 관 |



한국폐기물협회  
Korea Waste Association



#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 목 적

- 지자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발생 사례 및 조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로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 ※ 최근 무단 방치·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다량 발생(약 120만톤)에 따라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19.2.21)하여 추진 중

## 개 요

- 일시/장소 : '19.5.7(화), 14:00~17:00 / 대전통계교육원 대강당
- 주최/주관 : 환경부·공제조합\* / 한국폐기물협회
  - \* 공제조합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참석대상 : 불법폐기물 담당 지자체 공무원
- 주요내용 : 불법폐기물 발생 시 조치방법 및 절차, 사례발표 등

## 세부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인사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14:10~14:40	불법폐기물 처리계획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지수, 이상수 사무관)
14:40~17:00	[방치폐기물 발생 및 조치 사례발표]	(진행) 한국폐기물협회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총괄설명 포함)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윤병상 공제관리팀장)
	(2) 폐기물소각전문중간처분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김정훈 대외협력팀장)
	(3) 재활용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I)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김두섭 대외협력팀장)
	(4) 재활용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II)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정진현 사무국장)
	(5)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최병운 사무국장)





## 목 차

<b>불법폐기물 처리계획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안</b> -----	<b>1</b>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지수·이상수 사무관)	
<b>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b> -----	<b>9</b>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윤병상 공제관리팀장)	
<b>폐기물소각전문중간처분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b> -----	<b>35</b>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김정훈 대외협력팀장)	
<b>재활용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Ⅰ)</b> -----	<b>45</b>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김두섭 대외협력팀장)	
<b>재활용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Ⅱ)</b> -----	<b>61</b>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정진현 사무국장)	
<b>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b> -----	<b>69</b>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최병운 사무국장)	







## 1. 불법투기 폐기를 확대 처리방안

### 대통령 지시사항('19. 4.29)

- ◆ 당초 불법폐기물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 (당초) 연내 49.4만톤(41%) → △ (변경) 120.3만톤 전량 처리 계획\*
    - \* 추경 반영(314억원)으로 처리목표 상향(당초 '19년 본예산 58억원)
- ◆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할 것
- ◆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
- ◆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불법투기) 당초 원인자 처리 계획 → '19년내 33만톤 전량 처리

- (처리 개요) 기처리 4.2만톤을 제외한 28.8만톤을 시·도 공공처리시설(소각·매립)에서 신속처리 추진(추경 184억원, 52개 지자체 132개소)
    - 공공처리시설로의 운반비용은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소각·매립은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활용
  - (추진 계획) 시·도 책임으로 관할 폐기물을 시·군·구 경계 없이 광역 소각처리하고, 소각 용량 부족 광역시·도(전북, 충남·북, 경북)는 광역 매립 처리 추진
    - 소각시설 여유용량이 충분하여 불법투기 폐기물을 기초단체 내에서 자체 소각처리 가능한 시·군은 조속히 자체 처리
    - 공공처리시설(소각·매립) 용량이 부족한 기초단체는 광역 시·도에서 인근 여유율이 있는 시설에서 처리토록 적극 조정
- ⇒ 광역 시·도 차원에서 연계처리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소각·매립시설로 광역 시·도 내에서 전량 처리 가능

#### □ 지자체 이행 강화방안

- (처리현황 공개) 지자체별 불법폐기물 처리실적, 조치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분기별로 언론 브리핑 공표
  - 권역별 점검회의, 시도 부단체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활용
- (타 국고보조 예산과 연계 운영) 불법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하여 '20년도 환경부 국고지원사업 예산축소 등 타 예산사업과 연계 운영
- (지자체 평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적극 처리와 관련된 종합 노력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성과 높은 지자체는 재정인센티브(행안부 교부세 등) 부여, 소극적 지자체는 패널티(감사 등)
  - 불법폐기물 처리에 적극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조정교부세 등)을 행안부와 추가 협의
- (인력증원) 지자체 방치·불법폐기물 처리 전담 인력 확충\* 협의
  - \* 지자체 업무분석, 인력 수요 등을 조사하여 인력증원 추진

- 3 -

#### □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 (현 상황 인식 공유) 불법수출, 방치 폐기물은 원인자 처리,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 추진
  - ⇒ 다만,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 불명확, 파악에 장시간 소요, 2차피해 우려 등으로 공공처리를 통한 신속처리 불가피, 지자체 적극 동참 필요
  - \* 추경 반영을 통해 오랜 불법투기 민원을 해결하고, 그 간 행정대집행의 부담을(지방비 매칭, 구상권 청구) 해소할 수 기회(내년에는 별도의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비용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공공처리 확대시 원인자의 도덕적 해이 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원인자 수사 및 비용환수도 병행
- (시·군·구별 처리여건 분석) 총 52개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 소각 가능 12개, 인근 소각시설 연계 필요 29개, 일부 매립 불가피 11개
  - ① 소각 여유량이 충분하여 불법투기 폐기물을 기초단체 내에서 자체 소각처리 가능한 시·군은 12개소, 16,850톤

- 4 -

- ② 소각용량이 부족하여 인근 여유율이 있는 소각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시·군은 29개소, 196,806톤
  - 관내 소각용량이 부족한 시·군은 공공소각시설 외 제지회사 등 민간소각시설과 연계 무상처리방안도 자체 강구
  - 기초자치단체간 연계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 연계처리에 적극적인 시·군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방안 마련
  - 타 시·군 폐기물 반입처리시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지원
  - 불법투기 폐기물만큼은 지자체 공공처리장에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 주민협의를 철저히 등 사전 준비 철저
- ③ 광역 시·도 전체 소각시설으로도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인근 시·군이나 자체 매립 시설로 일부 매립이 불가피한 시·군은 11개소, 74,535톤
  -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불연성·가연성 분리 선별 후 매립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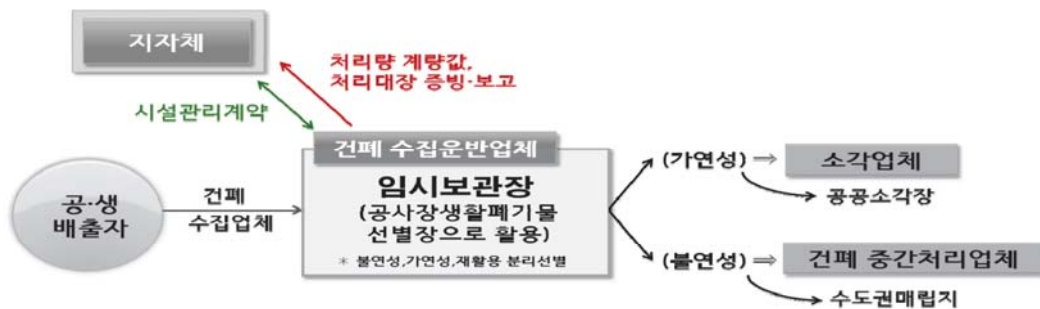
- 시·도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처리 재원으로 적극 활용
  - 환경부에서 분기별(7월초 교부개시) 정수액의 70%를 시·도에 교부할 예정( '18년도 정수액 700억원의 70%(488억원)를 시·도에 교부)

## 2.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방안

- (현황) 공사장 생활폐기물(인테리어 공사 등 5톤 미만 발생)은 지자체에 처리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 처리에 상당부분 의존
  - 특히, 서울시의 경우 보관부지 부족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90% 이상(77만톤)을 임시보관장(건폐 수집운반업체)을 통해 처리
- (문제점) 임시보관장에서 절단행위를 금지하는 건폐법 개정안이 시행(4.19)됨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저해 우려
  - \* 부산은 임시보관장이 재활용처리업 허가요건(파쇄시설, 여과집진시설)을 갖춘 경우에 재활용업 허가를 하여 선별작업을 양성화, 울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체를 통해 전량 수거하는 등 공공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관리 중

- (대응방안) 보관부지 부족 등 공공선별장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임시보관장을 지속 활용하되, 공공관리와 환경관리는 강화
- 지자체와 임시보관장간 관리계약 등을 통해 임시보관장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장’으로 지정,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한해 선별토록 역할 부여



- (공공관리 강화) 발생원부터 분리배출, 재활용 가능자원 최대한 선별·재활용 원칙, 매립지 반입을 위한 절단은 허용\*하되, 최소화
  - \* (법률자문결과) 임시보관장의 절단행위 금지는 건설폐기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건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인테리어업체 등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고, 임시보관장 운영업체는 건폐 분리칸막이, 중량계근대 설치를 통한 반입·반출량, 최종처리업체 인수인계사항 기록관리, 지자체 신고 등 의무화
- (환경관리 강화) 비산먼지 방지 살수시설, 방진덮개, 침출수 유출방지 배수시설, 소음방지벽 등 강화\*된 환경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점검강화
  - \* (기존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방진벽 견고한 재질로 강화, 바닥포장 외 저류시설 추가, 지붕덮개 외 벽체시설 추가설치
- (계도기간 운영) 관리계약, 추가시설 설치 등 적정 처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2~3달간은 절단금지 시행 후 단속 계도기간으로 운영

- (중장기 개선방안) 지자체가 공공선별장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시사체가 직접 운영하는 선별장 확대) 시사체가 공공선별장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지자체 소각·매립장에서 처리
  - \* '20년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비 국고지원 추진
  - (임시보관장을 재활용업으로 전환)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임시보관장소 중 입지여건, 주민 설득이 가능한 곳은 재활용업 허가요건을 갖추면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방안추진

### 3. 생활폐기물 관리방안

#### □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상향 개선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부처 합동, '18.8.22)
  - 지자체별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실태조사 후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상향 권고(3~7%→최대 9%)

- 9 -

- (현황) 종량제지침 제정시( '94.9) 판매소의 수수료율은 9%(상한)로 당시 복권 수수료 수준으로 설정, 현재까지 24년간 동일 요율 유지

< '16. 시·도별 위탁판매수수료율 >

(단위 : %)

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7.3	5.8	7.7	7.7	6.5	7.7	5.7	8.5	9.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4	4.8	8.4	8.7	3.2	7.3	7.7	8.0	9.0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 통계(2016)

- (개선) 판매소의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침상 상한 9%까지 상향조정토록 지자체에 요청, 판매수수료율 하한(9%) 고정 검토 등

- 10 -

□ **농업부산물\* 소각금지 홍보 및 계도 강화**

\* (농업부산물) 볏짚, 깻대, 콩대, 줄기 등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발표(제56회 국정현안조정회의, '18.11.8.)
- 농업부산물 소각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급증(봄·가을·겨울)
- 일부 지자체 및 소방청에서는 농업부산물 소각을 합법화 해달라는 건의('17.~' 18.)

☞ 불수용(장기검토 필요, 농촌지역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농업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해당 농경지의 거름으로 이용, 현행 법규에도 초분류를 제조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쪼개짐으로 재활용하도록 허용,

아울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은 농업부산물 및 농가발생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과는 관련 없음)

- 농업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국민들의 미세먼지 불편 민원을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농업부산물 처리대책 마련 및 홍보·교육 필요

- 농업부산물 처리 우수사례 제출 요청('18.11월말, 우수사례 모음을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 전파)

□ **폐소화기 배출 및 수거 체계 정비로 국민 불편을 개선**

-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 폐소화기가 매년 200만개 이상 발생될 것으로 추정

<최근 10년간 분말소화기 생산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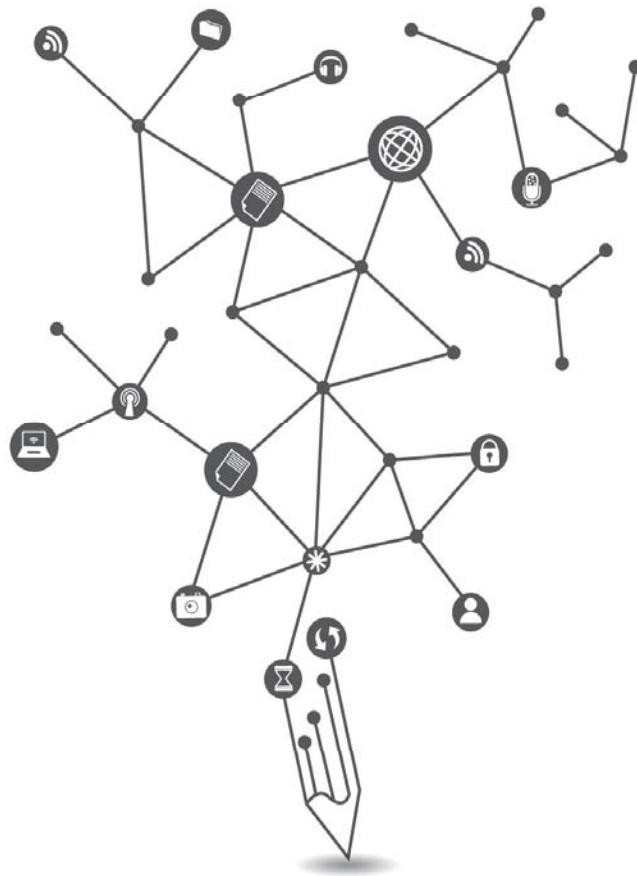
(단위 : 만개)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0	215	229	234	275	420	418	434	638	1,003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소화기의 배출방법을 종량제 시행지침에 반영
  - 대형폐기물의 종류, 기타(폐소화기 추가)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

윤병상 공제관리팀장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

2019. 5. 7



## 목 차

I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소개

II 방치폐기물 처리 주요사항

III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IV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 · 점검 시 착안사항





## 1.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소개

### 주요현황

#### ❖ 설립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립
- 설립연도 : 1999.12.29

#### ❖ 주요사업

-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 ❖ 조직 및 구성

- 조합본부 및 전국 12개 지부
- 조합원 수 : 총 348개사(19.05.01기준)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

구분 순번	업체명 (발생연도)	허용보관량 (톤)	발생량 (톤)	조합처리량 (톤)	나머지물량 (톤)	비고
전체		370,663	1,002,520	519,854	482,666	
1	○○환경㈜ 2000.06.21	9,878	66,940	66,940	-	-
2	㈜○○환경산업 2000.01.17	12,000	37,888	37,888	-	-
3	○○산업㈜ 2001.04.26	8,000	10,119	10,119	-	-
4	(유)○○환경개발 2002.09.14	19,000	56,419	28,500	27,919	허용보관량 1.5배 초과
5	○○개발㈜ 2002.10.30	25,000	24,232	24,232	-	-
6	○○환경개발㈜ 2004.08.17	12,120	1,004	1,004	-	-
7	○○기업㈜ 2007.05.04	30,000	76,334	45,000	31,334	허용보관량 1.5배 초과
8	㈜○○공영 2008.07.09	29,500	15,183	15,183	-	-
9	○○환경산업㈜ 2010.03.26	16,800	2,965	2,965	-	-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

구분 순번	업체명 (발생연도)	허용보관량 (톤)	발생량 (톤)	조합처리량 (톤)	나머지물량 (톤)	비고
전체		370,663	1,002,520	519,854	482,666	
10	㈜○○환경 2014.06.24	8,800	27,320	13,200	14,120	허용보관량 1.5배 초과
11	㈜○○기업 2014.08.28	23,000	20,481	20,481	-	-
12	○○○환경㈜ 2015.03.12	7,200	32,177	10,800	21,377	허용보관량 1.5배 초과
13	㈜○○개발 2015.01.14	15,097	12,140	12,140	-	-
14	○○환경개발㈜ 2015.07.01	33,068	56,569	49,602	6,967	허용보관량 1.5배 초과
15	㈜늘○○ 2016.07.22	16,000	38,961	24,000	14,961	허용보관량 1.5배 초과
16	㈜○○환경 2016.12.02	48,000	187,065	72,000	115,065	허용보관량 1.5배 초과
17	○○환경산업㈜ 2017.04.04	20,000	231,778	30,000	201,778	처리 준비중
18	○○이엔씨㈜ 2017.06.09	37,200	104,945	55,800	49,145	처리 준비중

7

##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 방치폐기물 정의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방법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8

### 3.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 시·도시사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9

### 4. 방치폐기물 처리 절차

#### 방치폐기물 처리 절차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  
(원인자)

법 제43조

처리명령 미 이행

1.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위탁한 자
2. 처리업자에게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법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4. 그 밖에 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부지를 인수한 자

법 제45조

※ 시·도시사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처리명령 미 이행

1. 분담금을 낸 경우
    - ▶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 시·도시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 ※ 분담금을 낸 경우,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

법 제46조

10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1]

### 발생배경

1

#### • (주)OO환경

- 폐기물 과다적치에 대한 토지주 및 지역주민 민원제기
- 사업장부지 사용허가(농지) 연장 불가 및 이전명령
- 이 후 영업중단 및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으로 영업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및 보관시설기준 미달로 허가취소

### 주요내용

2

#### • 발생현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토지주 처리물량
27,320톤 (허용보관량 8,800톤)	13,200톤 (허용보관량 1.5배)	14,120톤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1]

## 주요내용

3

### 방치폐기물 발생 사진 [1]

총 발생량 27,320톤 (매립폐기물 포함)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사진



굴착을 통해 사업장부지 매립폐기물 확인(허가기관 및 토지주 입회)

13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1]

## 주요내용

4

### 방치폐기물 발생 사진 [2]



침출수 발생



침출수 유입 확인

14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1]

## 주요내용

5

### 진행경과

- '13.10.08 허가관청 → 해당 업체에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 처리기간 : 2013.11.01일까지
- '14.06.24 허가관청 →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 처리기간 : 2014.09.19일까지
- '14.07.01 조합 → 방치폐기물 측량 실시  
\* 허가기관 및 토지주 입회
- '14.07.29 조합 → 방치폐기물처리 소위원회 개최  
\* 처리물량, 처리방법 및 처리업체 등 심의
- '14.08.25 조합 → 처리업체 선정
- '14.11.07 허가관청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27,320톤(조합 13,200톤, 토지주 14,120톤)  
\* 처리기간 : 2014.06월 ~ 11월(약 6개월)

15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1]

## 주요내용

6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로 재활용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1) : 사업장부지 내 매립폐기물 위에 약 1~3m 복토된 후 농작물이 재배된 상태  
☞ 해결방법 : 구간을 나눠서 매립폐기물 처리 후 처리된 구간에 순차적으로 복토하여 처리 완료
- 문제점 2) : 방치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여서 정확한 발생물량 및 성상 등 확인 불가  
☞ 해결방법 : 물량 성상 등을 구분하기 위해 허가기관 및 토지주 입회 하에 굴착 확인
- 문제점 3) : 토지주(3명) 처리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  
☞ 해결방법 : 처리 완료 후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 금액을 조정하여 분쟁 해결

16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1]

## 주요내용

7

### 처리완료 사진



17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2]

## 발생배경

1

### (주)OO기업

- 조합 →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명 조치
- 제명사유 : 가연성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시정요구 미 이행
- 허가관청 → 조합 제명 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 조치에 의한 허가취소

## 주요내용

2

### 발생현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성상별 물량
20,481톤 (허용보관량 23,000톤)	20,481톤 (전체 처리)	건설폐재류 13,690톤 페콘크리트 190톤 가연성폐기물 6,601톤

18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2)

### 주요내용

3

#### 방치폐기물 발생 사진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사진



세부 성상 사진

19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2)

### 주요내용

4

#### 진행경과

- '13.10.08 허가관청 → 해당 업체에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 \* 처리기간 : 2013.12.31일까지
- '14.08.28 허가관청 →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 \* 처리기간 : 2014.11.28일까지
- '14.09.02 조합 → 방치폐기물 측량 실시
  - \* 허가기관 입회
- '14.09.11 조합 → 방치폐기물처리 소위원회 개최
  - \* 처리물량, 처리방법 및 처리업체 등 심의
- '14.09.24 조합 → 처리업체 선정
  - \* 일괄처리(턴키) 및 공동이행 방식
- '14.11.07 허가관청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 \* 처리물량 : 전체 20,481톤
  - \* 처리기간 : 2014.10월 ~ 2015.03월(약 6개월)

20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2]

## 주요내용

5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는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로 재활용
  - \* 분리 선별 후 발생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으로 위탁 처리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방치폐기물에 가연성폐기물의 혼합 비율이 상당하여 처리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웠음
- 해결방법 : 방치폐기물 성상판단 용역을 통해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 판정
  - \* 약 12개(톤백)의 시료를 채취하여 약 1개월간 성상분리작업 진행

21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2]

## 주요내용

6

### 방치폐기물 성상 분리 작업 진행

- 발주 설계를 위한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 판정

\* 분석기관 : 한국건설자원협회



성상판단 작업 모습

22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2]

### 주요내용

7

#### 처리완료 사진



23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3]

### 발생배경

1

#### OO환경개발(주)

- 대표이사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영업중단
- 허가관청 → 90일 이상 영업중단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미 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 허가취소 이 후 해당 업체에서 약 60,00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 하였으나, 사업장 연접부지에서 매립폐기물이 추가(약 30,000톤)로 발생하자 처리 포기

### 주요내용

2

#### 발생현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성상별 물량
56,569톤 (허용보관량 33,068톤)	49,602톤 (허용보관량 1.5배)	건설폐재류 47,465톤 폐콘크리트 1,862톤 가연성폐기물 275톤

24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3)

## 주요내용

3

### 방치폐기물 발생 사진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사진



세부 성상 사진

25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3)

## 주요내용

4

### 진행경과

- '13.08.02 허가관청 → 해당 업체에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 3차례 처리기한을 연장 해주었으나 처리 미 이행
- '15.01.13 허가관청 →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 처리기간 : 2015.05.15일까지
- '15.01.22 조합 → 방치폐기물 측량 실시  
\* 허가기관 및 토지주 등 입회
- '15.07.24 조합 → 방치폐기물처리 소위원회 개최  
\* 처리물량, 처리방법 및 처리업체 등 심의
- '15.08.06 조합 → 처리업체 선정  
\* 16.09.29 처리업체 용역 계약 해지 처리 이행촉구(4차) 미이행
- '16.10.07 방치폐기물처리 소위원회(2차) 개최 및 처리업체 재 선정
- '16.12.28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49,602톤  
\* 처리기간 : 2015.08월 ~ 2016.12월(약 16개월)

26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3)

### 주요내용

5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는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로 재활용
  - \*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으로 위탁 처리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현장 진입 도로 주변 공장에서 안전사고 및 먼지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제기 및 통행차단
  - \* 진입로 일부가 주변공장 사유지
- 해결방법 : 현장 외각지역 임야 개발현장 토지주와 임시 우회도로 개설 협의 후 운반 처리
  - \* 계근대, 세륜기 등도 협의 후 설치 운영



27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3)

### 주요내용

6

#### 처리완료 사진



28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4]

## 발생배경

1

### • (주) OO환경

- 국가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 그룹 횡령사건 등으로 대표이사 구속 등 경영악화
- 폐기물처리시설 철거(행정대집행) 등으로 영업중단
- 허가관청 → 90일 이상 영업중단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미 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 주요내용

2

### • 발생현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성상별 물량
187,065톤 (허용보관량 48,000톤)	72,000톤 (허용보관량 1.5배)	건설폐재류 37,080톤 건설폐토석 32,328톤 가연성폐기물 2,592톤

29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4]

## 주요내용

3

### • 방치폐기물 발생 사진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사진



세부 성상 사진

30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4)

### 주요내용

4

#### 진행경과

- '16.10.12 허가관청 → 해당 업체에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 '16.12.02 허가관청 →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 \* 처리기간 : 2017.05.31일까지
- '17.08.31 공제조합 → 방치폐기물처리 위원회 개최
  - \* 처리물량, 처리방법 및 처리업체 등 심의
- '17.09.02 공제조합 → 허가관청 처리기간 연장 요청
  - \* 처리기간 : 2017.11.30일까지
  - \* 사유 : 방치폐기물의 물량이 약 4만톤을 초과하고 있어 단기간에 처리가 불가한 사황을 감안
- '17.11.14 허가관청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 \* 처리물량 : 전체 72,006.46톤
  - \* 처리기간 : 2017.9월 ~ 11월(약 3개월)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는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로 재활용
  - \*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으로 위탁 처리

31

## 1.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사례 (4)

### 주요내용

5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하루 평균 100대 이상 반출, 많은 차량 운행으로 인근 주변 민가에서 비산먼지 발생 민원 제기
  - ☞ 해결방법 : 살수차를 당초 1대에서 2대로 증가하여 최대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 처리완료 사진



32



## 1. 방치폐기물 예방 활동

###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사업장 주요 확인사항

- ❖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 ❖ 폐기물 보관 장소 원지반 확인
- ❖ 가연성폐기물 및 혼합건설폐기물 보관 상태 적정 여부
- ❖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보관 여부
- ❖ 사업장 내·외부에 폐기물 매립 및 적치 여부

35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 확인사항

#### ● 허용보관량 초과 사례



허용보관량 초과 상태

허용보관량 이내 처리

36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 · 점검 시 착안 사항

### 확인사항

#### •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 허가 · 승인 또는 신고 시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 보관중인 폐기물(보관용적 x 비중)을 확인 또는 계측하여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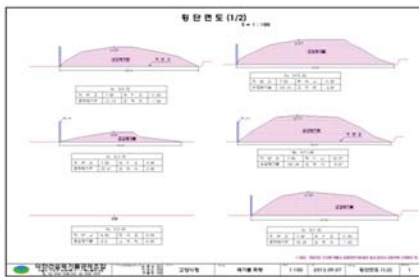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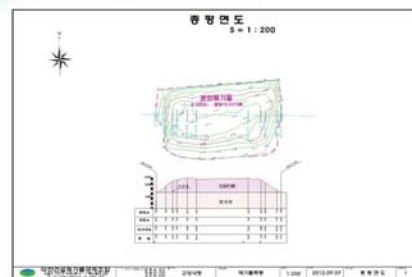
• 필요시 실제 보관량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및 초과보관량을 확인



37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 · 점검 시 착안 사항

### 물량산출



포장체 기준					
높이	거리(m)	단면적(m²)	평균단면적(m²)	폐기물보관량(m³)	비고
No.0+0.00	0.0	0.0	0.0	0.0	
+3.70	3.7	23.5	11.8	43.5	
+6.33	2.6	71.4	47.5	124.9	
+7.96	1.6	97.2	79.3	129.3	
+11.86	3.9	101.3	94.2	367.5	
+15.39	3.5	101.1	101.2	357.1	
+36.16	19.8	101.4	101.2	2000.9	
+40.00	4.8	94.4	92.9	449.5	
+41.54	1.5	73.4	78.9	121.5	
+45.90	4.4	20.3	46.9	207.2	
+47.59	1.6	0.0	10.2	16.6	
계				3,818	m³

38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 확인사항

#### ❖ 허용보관량이 초과되었을 경우 조치사항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액 조정 또는 보험계약 갱신 조치)
  -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기간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 시(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여 산출
  - 보험금액 산출기준 : 초과보관량 X 처리단간 X 3.0
-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종류별 기준단가 적용**
-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초과 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

39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 확인사항

#### ● 폐기물 보관 장소 원지반 확인

- 석축 또는 옹벽 상단 밑 부분은 **원지반이라고 주장하나, 대부분 폐기물로 적치**
- 확인방법
  - 건설장비(굴삭기) 등으로 굴착하여 원지반 확인
  - 원지반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등으로 확인
- 필요 시 허가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진 또는 사업장 공사 사진 등 요구



40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 · 점검 시 착안 사항

### 확인사항



41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 · 점검 시 착안 사항

### 확인사항

- 가연성폐기물 및 혼합건설폐기물의 보관 상태 적정 여부
  - 폐합성수지류 또는 가연성이 다량 포함된 혼합건설폐기물이 장기간 과다 적치될 경우, 환경오염 및 사회적 문제 발생
    - 침출수, 악취, 화재(자연발화)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폐기물로 이어질 경우 경우 고액의 처리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큼
  - 가연성폐기물이 다량으로 장기간 적치 및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42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 확인사항

-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보관 여부 확인
  - 처리방법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성상별로 보관 장소를 구분하여 경계 및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



43

## 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 확인사항

- 사업장 내·외부에 폐기물 매립 및 적치 여부
  -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 안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측량 및 지적도 등을 통해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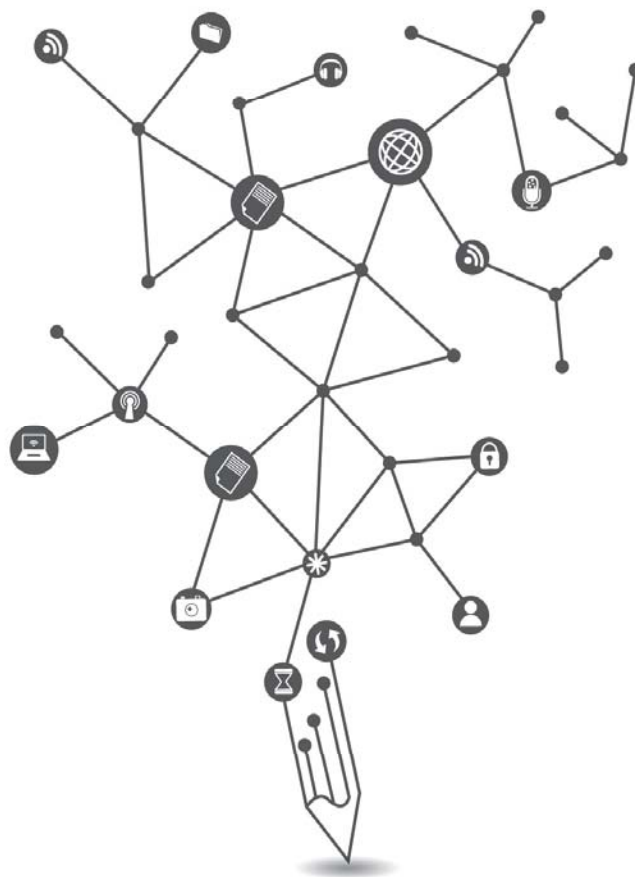
44





# 폐기물소각전문중간처분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

김정훈 대외협력팀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목 차

- I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개
- II 공제사업 현황
- III 방치폐기물 발생사례
- IV 사업장 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 V 방치폐기물 발생별 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 I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개

### 1. 일반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SKY1004빌딩, 13층)
- 조합원수 : 49개사 (소각전문중간처리업, '19.4월 기준)
- 이사장 : 박무웅 [㈜국인산업 대표이사]
- 감독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
- 홈페이지 : <http://krema.kr>

### 2. 설립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1조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

### 3. 설립 목적

- 조합원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및 방치폐기물 처리
-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를 통하여 환경보전 기여
- 조합원의 이익 증진



1

## I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개

### 4. 조합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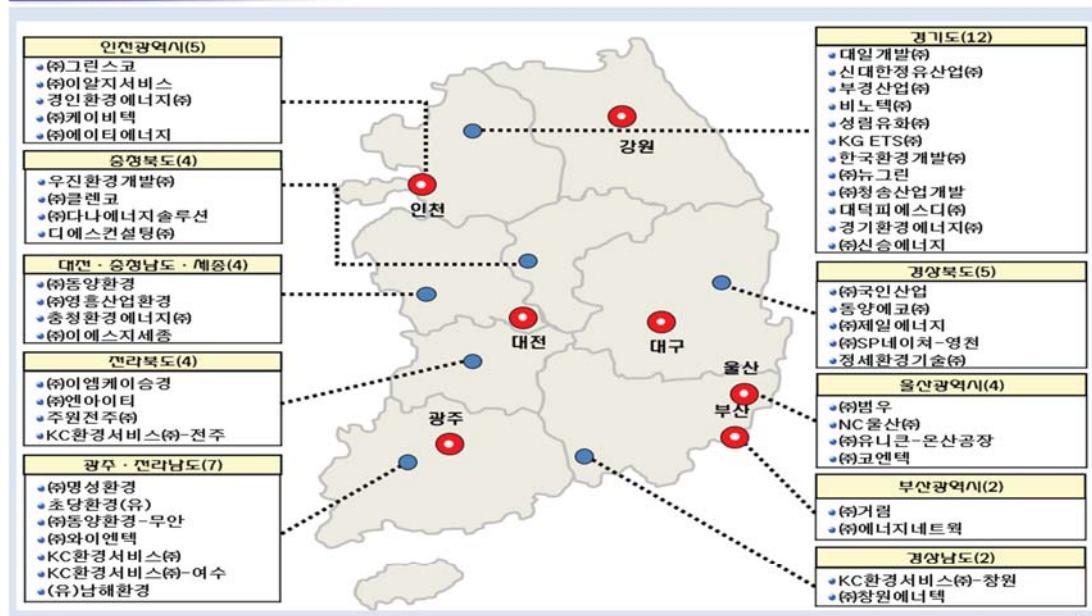
1984	11	한국산업폐기물협의회 독립 발족
1986	07	사단법인 한국산업폐기물협회 인가
1994	08	(사)한국산업폐기물처리협회로 명칭 변경
2000	01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인 설립 인가
2001	06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
2010	01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2013	07	조합사업 확대(입찰이행보증사업)
	11	재난폐기물 처리 협의기관 지정(환경부)
2015	02	제7대 박무웅 이사장 취임(㈜국인산업 대표이사)
2017	03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02	제8대 박무웅 이사장 연임
2018	05	조합 회관 "서울역" 이전
2019	02	환경부/조합,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자발적 업무 협약 체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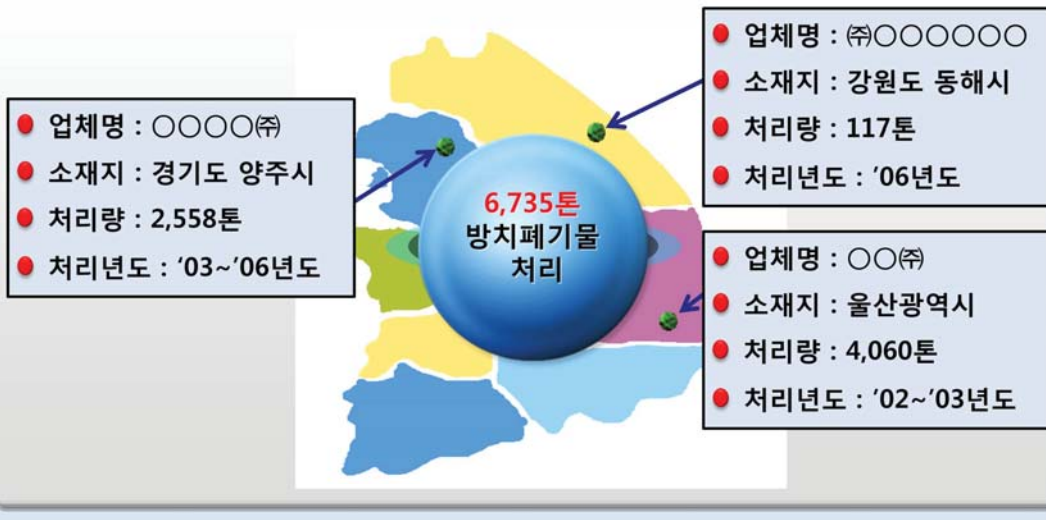
## I.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개

### 5. 조합원사 분포 현황



## II. 공제사업 현황

### • 폐기물처리업체(조합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처리



### Ⅲ. 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 1. 발생배경

-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방치폐기물 발생

#### 2. 발생현황

총 발생량	성상별 세부물량	조합 처리물량
가연성폐기물 7,060톤	일반 950톤, 지정 6,110톤	4,060톤 (일반 950톤, 지정 3,110톤)

※ 미허가 보관시설 불법보관 3,000톤은 조합 처리 대상에서 제외

#### 3. 처리방법

- 처리물량 : 가연성폐기물 4,060톤(일반 950톤, 지정 3,110톤)
- 처리방법 : 조합원사(15개사) 위탁 소각처리

#### 4.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참여 조합원사의 기존 반입 폐기물 처리 정체 발생
- 해결방법 :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탁처리 참여 조합원사 보관기일 연장 조치 요청

### Ⅲ. 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 5.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 IV. 사업장 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 1.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 주요 확인사항(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17.12.27)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보관·관리 상태
-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 여부

환경부령 제128호(2017.12.27)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장 총칙**

**제3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 한디의 통합지도·점검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치시설의 정상가동과 적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단계)의 장"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환경상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란 지도(단계)의 장과 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 위한 지도·점검의 경우, 회계(회계)감독관(감독관)을 포함한다.
4. "방치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에너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에너지 등 절약 법률"에서 각각 규정한 오염도 검사기관을 말한다.
5. "지도·점검"이란 한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규정이 적용 허가 및 등록 사업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장의 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지도·점검"이란 한 사업장에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을 동시에 지도·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19)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업종	사업장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배출량	

주요생산품명 생산량(톤/년) 주요사용연료명 사용량(톤/일)

폐기물 배출 및 적치현황	종류	수량(톤/일)	배출장(톤/일)	처리방법		별개보관량(톤)
				자기처리(방법/량(톤))	외탁처리(방법/량(톤))	

자기처리시설(예정)되는 경우여 현황

시설명	설치승인(신고)일자	규격(능력)	처리량(톤/일)
-----	------------	--------	----------

자기제염시설(예정)되는 경우여 현황

소계	설치승인(신고)일자 및 설비 용량(t)	사용량(일) 및 잔여 용량(t)	잔여 용량 (t)	현재제염량 (t/일)
----	-----------------------	-------------------	-----------	-------------

[19-027(별지)번호서식] (폐기물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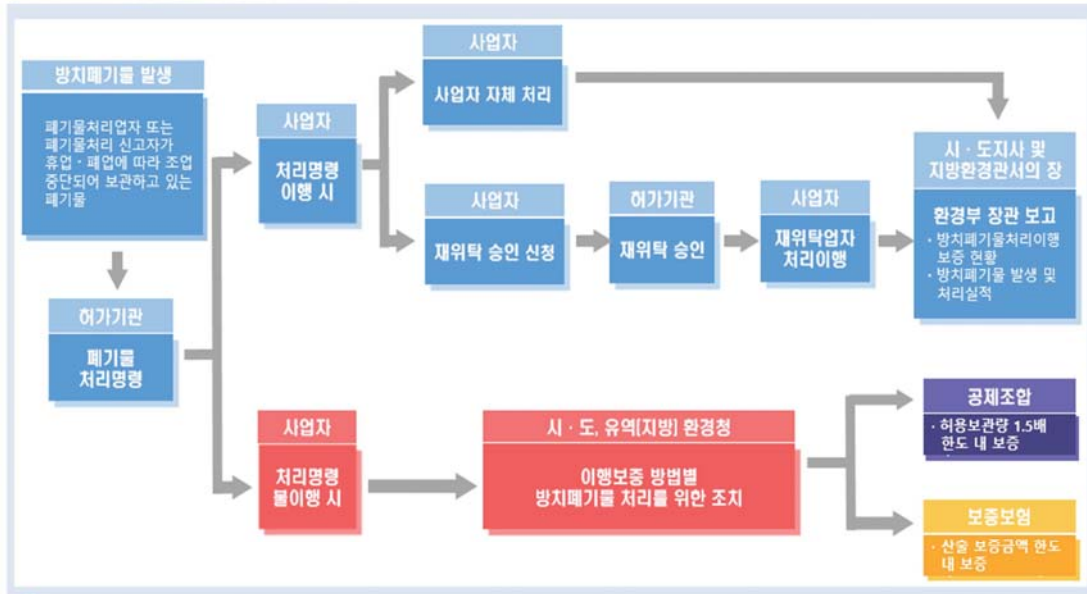
## IV. 사업장 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 2.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 중점 확인사항

- 폐기물 보관량 준수 여부 확인
  - 폐기물 보관시설 내 허용보관량 적정 여부
  -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야적 여부
- 이행보증 대상폐기물 준수여부 확인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대상 폐기물 종류별 확인
  - 그 외 반입불가 폐기물 반입 여부 확인
- 소각재(바닥재, 비산재) 적치량 및 적정처리 확인
  - 폐기물 처분 시 발생하는 소각재의 적정 보관 및 처분 여부 확인 (소각재 다량 적치 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 시설 적정 운영 확인
  -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정상가동 유무 확인
  - 폐기물 반입 및 처리 등 현황(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 등) 상시 확인 (반입 및 처리 불균형으로 인한 폐기물 적치 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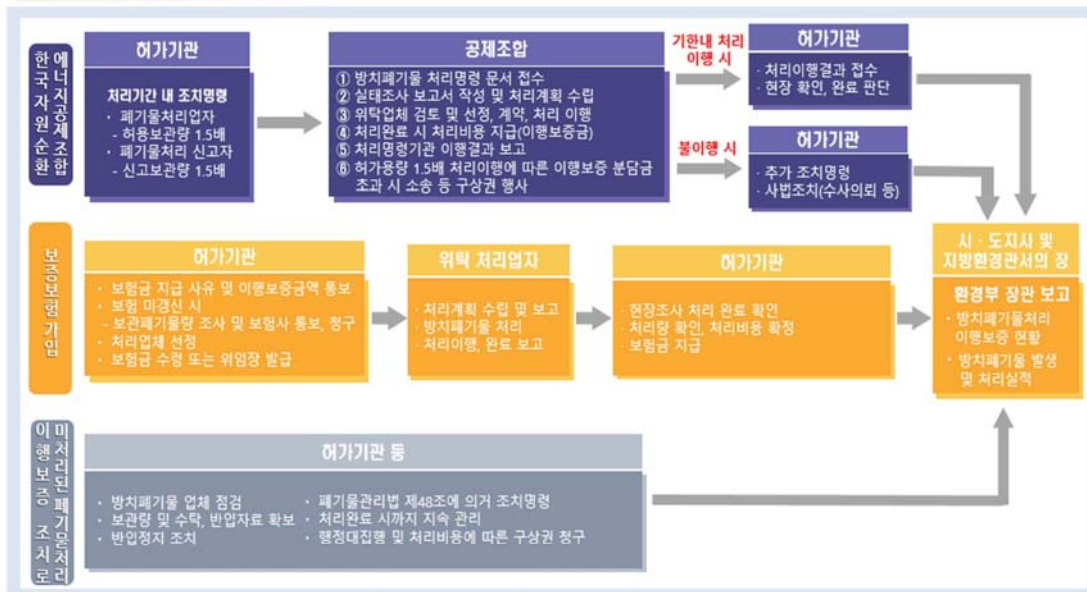
## V. 방치폐기물 발생별 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 1.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 V. 방치폐기물 발생별 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 2.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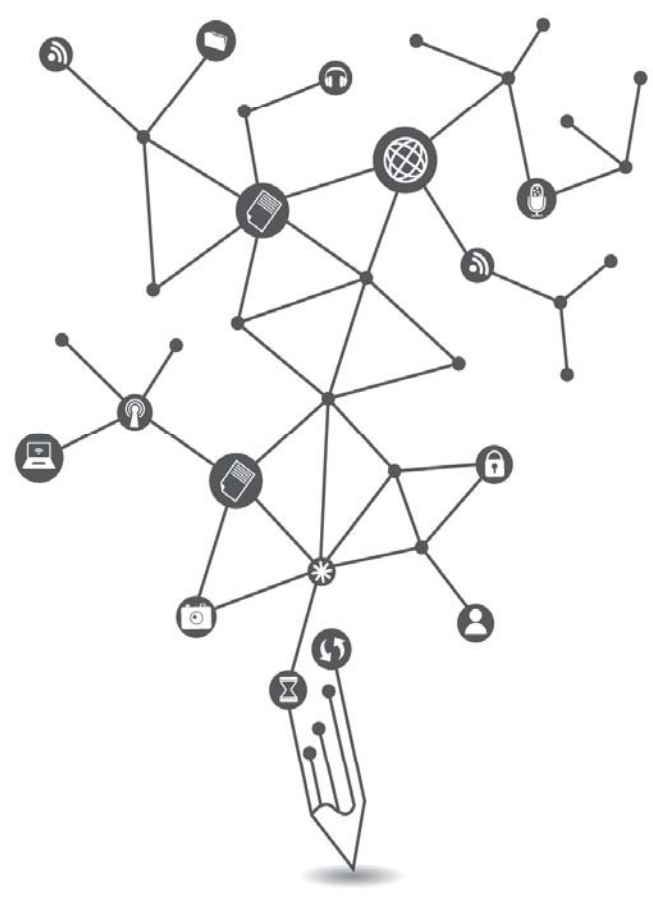






# 재활용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 I )

김두섭 대외협력팀장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재활용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 I )



## - 목 차 -

I. 조합 소개

I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III. 사업장 점검시 주요 확인 사항

IV. 업종별 방치폐기물 처리순위



# 1. 조합 소개

## 1. 조합 소개



### 조합소개

☞ 우리 조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및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를 통해 정부의 자원순환 및 환경정책에 참여하여 환경보전과 재활용사업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경부로 1999년 11월에 허가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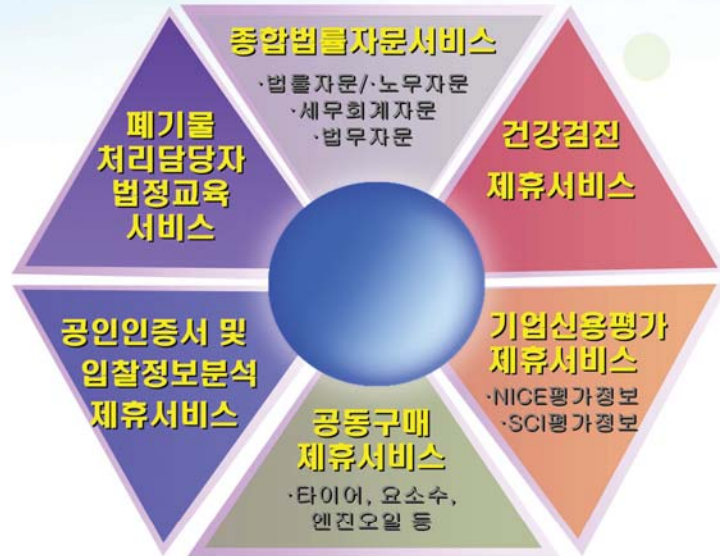


### 조합 주요사업

- ☞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처리공제사업
- ☞ 조합원의 폐기물처리 보증사업(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 ☞ 조합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및 법안개정
- ☞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지도
- ☞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타서비스 등

## I. 조합 소개

### 조합 제휴서비스



## I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I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사례1 - ○○자원

#### 배 경

-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비 고
폐합성수지 107.17톤 (허용보관량 78톤)	폐합성수지 107.17톤 (허용보관량 1.5배)	-

#### 처 리 방 법

- 처리물량 : 전체 107.17톤 (조합 전량처리)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위탁 처리

## I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I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 처리경과

- ▶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이행사항 확인 알림 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107.17톤 (조합 전량처리)
  - 처리기간 : 2016.09월(약 1개월 이내)

###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 I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 사례2 - ○○케미칼

#### ☞ 배 경

-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

####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비 고
폐합성수지 73.84톤 (허용보관량 135톤)	폐합성수지 73.84톤 (허용보관량 1.5배)	-

#### ☞ 처리방법

- 처리물량 : 전체 73.84톤 (조합 전량처리)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위탁 처리

## I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I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 처리경과

- ▶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이행사항 확인 알림 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73.84톤 (조합 전량처리)
  - 처리기간 : 2017.07~08월(약 1개월 이내)

###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 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 문제점 1 - 제품과 폐기물의 구분이 모호
  - 해결방법) 지자체에 처리대상폐기물 명확화 요청 → 지자체 · 공제조합
  - 방치행위자(폐기물처리업자) 3자간 입회하에 현장확인 → 폐기물처리범위 현장입회 확인서 발급 → 처리대상 폐기물 구분 완료
  
- ☞ 문제점 2 - 도로진입로 협소 / 사업장 진입시 인근 토지를 지나가야 하는데 방치행위자와 인근 토지소유자간 불화로 인한 처리 지연
  - 해결방법) 방치폐기물처리기간(2개월) 연장(1개월)을 통해 원만히 해결 / 기간내 처리곤란시 처리기간(2개월+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규정 필요

## II.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 ①(생략)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문제점 3 - 폐기물이 자가부지와 임대부지에 걸쳐서 방치된 경우 / 토지소유자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선처리 해줄 것을 요청
  - 해결방법) 자가부지는 공제조합이 처리하였으며, 임대부지는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III. 사업장 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1. 폐기물처리업체 점검 주요 확인사항

- ◎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 ◎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 ◎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 폐기물 적법처리여부 사항
- ◎ 환경책임보험 적함 가입 여부
- ◎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 ◎ 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
-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Ⅲ. 사업장 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1. 폐기물처리업체 점검 주요 확인사항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점검사항	주요 착안사항
1.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업 허가증 비치여부(원본)</li> <li>○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방법</li> <li>-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대상 폐기물</li> <li>- 처리시설 소재지·사업장명 등</li> </ul> </li> <li>○ 허가조건의 준수여부</li> <li>○ 기술인력 전임 등 『국가기술법』상 자격증 대여 금지위반 여부</li> </ul>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보관량 준수여부(초과보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비중은 해당 사업장의 제시값을 적용하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시험 분석 실시</li> <li>-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 실시</li> </ul> </li> <li>○ 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 (허용보관량 대비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확인)</li> </ul>

### Ⅲ. 사업장 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1. 폐기물처리업체 점검 주요 확인사항

점검사항	주요 착안사항
3. 폐기물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적정 입력 여부</li> </ul>
4.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받은 폐기물이 처리시설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 (관리대장 및 반입차량 확인)</li> <li>○ 허가 받은대로 폐기물 처리여부</li> <li>○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여부</li> <li>○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기준 준수 여부</li> <li>○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li> </ul>
5.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li> <li>○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li> <li>○ 안전관련시설의 적정 관리여부</li> <li>○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 수위 측정결과(m) 및 적합 여부</li> </ul>

### Ⅲ. 사업장 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1. 폐기물처리업체 점검 주요 확인사항

점검사항	주요 착안사항
6.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시행규칙 별표5)</li> <li>○ 폐기물종류별 구획보관 여부</li> <li>○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li> <li>○ 보관기간 준수여부                      ○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여부</li> <li>○ 침출수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 (외부 유출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li> <li>○ 액상폐기물 저장시설(용기) 세척으로 세척수(액상폐기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액상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li> </ul>
7.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출수 누출, 비산, 운반방법, 용기 등 적정성 확인</li> <li>○ 운반차량의 적정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증 발급 여부</li> <li>- 바닥 밀폐 및 덮개 비치 여부 등</li> </ul> </li> <li>○ 폐기물인계서 확인</li> </ul>

### Ⅲ. 사업장 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1. 폐기물처리업체 점검 주요 확인사항

점검사항	주요 착안사항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li> <li>○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li> <li>○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수료 여부</li> <li>○ 각종 대장 적정 작성 및 보관여부</li> <li>○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처리업자에 한함)</li> <li>○ 기타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li> </ul>
9.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li> </ul>

### III. 사업장 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2. 폐기물재활용업체 중점 확인사항

##### 폐기물 보관량 준수

- ☞ 폐기물의 보관시설내 보관여부
- ☞ 보관시설외 사업장내 야적여부

<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사례 >



<폐기물 옥외보관>



<보관시설 내 폐기물 보관>



### III. 사업장 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2. 폐기물재활용업체 중점 확인사항

##### 이행보증대상폐기물 준수

- ☞ 이행보증대상폐기물 종류별 확인
- ☞ 그 외 반입불가 폐기물 반입여부 확인

<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사례 >



<반입불가폐기물 반입>



<이행보증대상폐기물 준수>

### III. 사업장 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2. 폐기물재활용업체 중점 확인사항

##### 잔재물 적치량 및 적정처리 확인

- ☞ 폐기물 재활용시 발생하는 잔재물의 적정처리여부 확인  
(잔재물 다량 적치시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사례 >



<폐기물 잔재물 적치>



<폐기물 잔재물 적정처리>

##### 수급불균형(반입폐기물/생산제품) 확인

- ☞ 폐기물 반입 및 생산제품 납품 등 수급현황(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대장 등) 상시확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폐기물 또는 제품 적치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 IV. 업종별 방치폐기물 처리순위



## IV. 업종별 방치폐기물 처리순위

###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법률)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 건설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IV. 업종별 방치폐기물 처리순위

###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법률)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건설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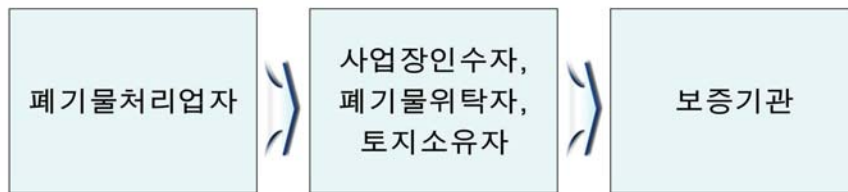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IV. 업종별 방치폐기물 처리순위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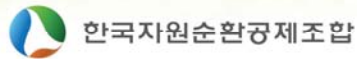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 재활용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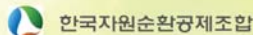
2019. 5. 7.



## CONTENTS



- I | 공제조합 소개
- II | 설립 이후 전체 처리 현황
- III | 방치폐기물 발생사례
- IV | 기타



## I. 공제조합 소개


### 1.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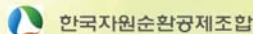
3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

근거	주요 업무
설립 및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허가 : 2014. 9. 26. 환경부 설립허가(제493호)</li> <li>-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임시보관장소 승인) 및 폐기물 중간·종합·최종재활용업과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이행보증 대상</li> <li>-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폐기물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고,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를 통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정책에 참여, 공공의 이익 도모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li> </ul>






## II. 설립 이후 전체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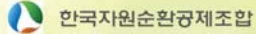
### 1. 현황

4

처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건수 : 1건(2017년)</li> <li>➢ 처리건수 : 1건(2017년)</li> <li>➢ 처 리 량 : 318.1톤</li> <li>➢ 처리비용 : 41,000,000원 (130,000원/톤, 처리비·운반비 포함)</li> </ul>
------	---



### III. 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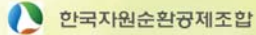


---

■ ○○에코(인천광역시 소재)
5

<b>발생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부실</li> <li>➢ 사업장 경매(경락자, 일반 제조업체) : 방치폐기물 존재함에 따라 경락자 및 행위자간 극심한 분쟁 및 소송(경락자가 사업장 폐쇄)</li> <li>➢ 경락자 : 해당 지자체 및 공제조합에 폐기물 처리 문의</li> </ul>
<b>발생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대상폐기물 및 허용보관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전선(503.2톤), 폐합성수지(207톤)</li> </ul> </li> <li>➢ 전체 발생량 : 약 7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전선은 없었으며, 폐합성수지만 방치</li> </ul> </li> <li>➢ 발생성상 : 고상의 폐합성수지류</li> <li>➢ 조합 처리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합성수지 : 310.5톤 (207톤×1.5배)</li> <li>- 실처리량 : 318.1톤</li> </ul> </li> </ul>

### III. 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

■ ○○에코(인천광역시 소재)
6

<b>진행경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 07.14. (지자체) ○○에코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계속 소송 진행</li> </ul> </li> <li>➢ 17. 06. 15.(지자체)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형사고발</li> <li>➢ 17. 06. (현장확인 및 협의) 지자체와 공제조합 현장확인 및 처리대상폐기물 및 처리물량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전선은 없으므로 제외하고 폐합성수지 207톤에 대하여 1.5배인 310.5톤 처리하기로 협의</li> </ul> </li> <li>➢ 17. 06. 15.(공제조합) 폐기물처리업체 수의계약(조합원 위탁처리)</li> <li>➢ 17. 07. 04. ~ 07.07.(공제조합) 방치폐기물 처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기간(4일)</li> </ul> </li> <li>➢ 17. 07. 11.(공제조합) 방치폐기물처리완료 및 실적 보고(지자체)</li> <li>➢ 17. 07. 21.(지자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이행완료 수리</li> <li>➢ 17. 08. 14.(공제조합) ○○에코 대표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소송</li> </ul>
-------------	--

### III. 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에코(방치폐기물 처리 사진) 7

폐기물 처리 전

폐기물 처리 중

방치폐기물 치리완료

### III. 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8

- 문제점
  - 공제조합 처리 후 약 300여톤의 방치폐기물 남음
- 해결방법
  - 지자체와 경락자간에 남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경락자가 남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









#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 방치사례, 조치방법 및 절차

2019. 05. 07.(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1

## 순서

- I. 의료폐기물 관련 용어
- II.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처리절차
- III. 의료폐기물처리업체(수집·운반업)

확인사항

2

## 1. 의료폐기물 관련 용어

### 1. 의료폐기물이란 무엇인가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의학, 치과의학, 안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함  
(법 제2조제5호)

### 2. 방치폐기물이란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어가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중단은 제외)경우, 어가받은 관할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법 제40조제2항)

3

## 1. 의료폐기물 관련 용어

### 3.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어가기관으로부터 어가받은 허용보관량(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도 포함)을 말하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의 허용 보관량을 말함

### 4.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 등)

4

## II.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처리절차

### 1.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방치폐기물 발생된 폐기물처리 및 의료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  
(2000.12.16., 영리법인 제7호 승인)

###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시기

- 가. 중간처분업자(법40조) : 영업 시작 전까지
- 나. 수집·운반업자 : 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5

## II.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처리절차

### 3.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범위

- 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여가):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여가 받은 허용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
- 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신고자) :  
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에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1.5배
-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초과한 보관량(허가관서의  
승인)은 폐기물 종류별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

6

## II.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처리절차

### 4.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

가.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안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 납부하고 납부증명원을  
발급받아 허가기관에 제출

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

- 가입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

7

## II.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처리절차

- 보험금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보험증서 원본 제출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보증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예시:2018.11.20.일 영업개시일로 1년기준으로 보험 가입시가입기간: '18.11.20. ~ 19.12.31. , 보증기간:2018.11.20.~2020.3.1.)

**※ 어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어용보관량초과 승인의 경우 승인 어용보관량의 3배의 금액을 갱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8

### 공제조합에 처리이행보증의 경우 좋은점

- ♠ 매년 분담금을 추가납부 없이 이행보증 계속유지
- ♠ 보증인 담보가 없고 이행보증 절차가 간소함
- ♠ 이행보증관련 제반 업무를 공제조합이 일괄처리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
- ♠ 보험료는 없어지나 분담금은 없어지지 않고  
잔액완금이 됨
- ♠ 조합원 다수로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로 공제기능 강화
- ♠ 방치폐기물 발생의 경우 공제조합이 직접처리

### 공제조합에 처리이행보증의 경우 좋은점

- ♠ 매년 갱신의 번거로움이 없어 행정처분을 받을  
염려가 없음
- ※ 보험 계약기간이 종료시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등 불이익을 받음)
- ♠ 환경부 및 지방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 ♠ 조합을 통해 사업사간 정보교환이 용이하고  
각종정보 제공

### III. 의료폐기물처리업체(수집·운반업) 확인사항

#### 1.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한 주요 확인사항

-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적법처리여부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p>1.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 <u>허가증 비치여부(원본)</u></li> <li>◦ 허가사항이 <u>실제사항과 일치</u>하는지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태반))방법</li> <li>-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 태반)대상</li> </ul> </li> <li>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사업장명 등</li> <li>◦ <u>허가조건의 준수여부</u></li> </ul>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p>2.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어용보관량 준수여부(초과보관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비중은 해당 사업장의 제시 값을 적용하되, 연차간 차이가 있을 경우 시험 분석 실시</li> <li>- 어용보관량 <b>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실시</b></li> </ul> </li> <li>◦ <b>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어용보관량 대비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확인)</b></li> </ul>
<p>3.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b>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적정 입력 여부</b></li> </ul>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p>4.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위탁받은 폐기물이 처리시설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관리대장 및 반입사량 확인)</b></li> <li>◦ <b>어가 받은 대로 폐기물 처리여부</b></li> <li>◦ <b>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여부</b></li> <li>◦ <b>수집·운반, 처리기준 준수여부</b></li> <li>◦ <b>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b></li> <li>◦ <b>처리능력이상의 수탁확인서 발급여부</b></li> </ul>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5. 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li> <li>○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li> <li>○ <u>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u></li> <li>○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의 설치.정기검사 실시여부</li> </ul>
6.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u> (시행규칙 별표5)</li> <li>○ <u>폐기물 종류별 구획보관 여부</u></li> <li>○ <u>보관기간 준수여부</u></li> </ul>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6.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어용보관량 초과보관 여부</u></li> <li>○ 액상폐기물 저장시설(용기) 세척으로 세척수(액상폐기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액상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li> </ul>
7.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출수 누출, 비산, 운반방법, 용기 등 적정성 확인</li> <li>○ <u>운반차량의 적정성 확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운반증 발급 여부</li> <li>- 바닥 밀폐 및 덮개 비치 여부 등</li> </ul> </li> <li>○ <u>폐기물인계서 확인</u></li> <li>○ <u>임시보관시설(시·도별로 1개소) 승인여부</u>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운반)</li> </ul>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p>8. 각종보고 사항 및 행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u></li> <li>◦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li> <li>◦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수료 여부</li> <li>◦ <u>각종 대장 적정 작성 및 보관여부</u></li> <li>◦ <u>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수집, 운반업 포함)</u></li> <li>◦ 기타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li> </ul>

### III. 의료폐기물처리업체(수집, 운반업) 확인사항

#### 2.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중점 확인사항

- 폐기물 보관량 준수
- 폐기물의 보관시설 내.외 보관및 야적여부
- 이행보증대상폐기물 준수
- 이행보증대상폐기물 종류별 확인
- 그 외 반입불가 폐기물 반입여부 확인

□ 수탁능력 확인서 발급 및 반입량 등 확인

☞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연왕(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 대장 등) 상시확인

□ 소각재(바닥재, 비산재)적치량 및 적정처리확인

☞ 폐기물 처분시 발생하는 소각재의 적정보관 및 처분여부(소각재 다량 적치시 방치폐기물발생우려)

\* <당부사항>방치폐기물이 발생하면 숨기지 말고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 처분조치하고 공제조합 및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 발생하면 처리가 곤란해짐)

19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연락처: 042-623-5553~4

메일 : kiwaa@hanmail.net

# 감 사 합 니 다 .

20

##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발 행 2019년 5월  
발 행 처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인 쇄 처 경성문화사  
전 화 (02)786-2999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주 최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Korea Construction Resource Mutual Aid Association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Korea Waste Recycling Association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 Recycling Energy Mutual Aid Association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주 관 |



한국폐기물협회  
KOREA WASTE ASSOCIATION